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553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임이자·최수진·김성원

이헌승 • 안상훈 • 김위상

유용원 • 조지연 • 신성범

김형동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

오늘날 디지털 전환, 그린경제 가속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쇠퇴산업이 집중된 지역의 경기침체 지속 등 지역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, 지역기업 구인난 등 다양한 경제적·사회적 문제가 야기·심화되고 있음.

이에 고용정책의 유연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역량 증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간 일자리 기회균등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와 함께 국가균형발전 달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또한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여 일자리사업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출연금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시책 수립·시행 의무를 명시하고, 시책 수립·시행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하도록 규정(안 제6조).
- 나.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 고용촉진 등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(안 제8조).
- 다.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고, 이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8조).

법률 제 호

###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8호 중 "활성화를"을 "활성화 등(이하 "지역고용 활성화" 라 한다)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특히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제18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
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7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5호"를 "제6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제6호"를 "제7호"로 한다.

6.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지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 정 안		
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	제6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		
책)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	책) ①		
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			
립·시행하여야 한다.		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		
8.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	8		
시장의 <u>활성화를</u> 위한 지역별	<u>활성화 등(이하 "지역고</u>		
고용촉진에 관한 사항	용 활성화"라 한다)을		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		
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	②		
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기업경			
영기반의 개선, 경제·사회의			
균형 있는 발전, 국토의 균형 있			
는 개발 등의 시책을 종합적으			
로 고려하여야 하며, 고용기회			
를 늘리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시			
정하며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			
있도록 하여야 하고, 차별적 고			
용관행 등 근로자가 능력을 발			
휘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고용			
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			
한다. <후단 신설>	특히 지역고용 활성화에		

_		_	>	
(3)	•	(4)	(생	략)

·시행) ①·② (생 략)

-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- 5. (생략)
- ④・⑤ (생략)

제18조(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) 제18조(한국고용정보원의 설립)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한국고용정보워의 사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.
- 1. ~ 5. (생 략)

<신 설>

-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에 관한 국제협력과 그 밖의 부대사업
- 7. (생략)
-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

관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는 경 우에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제8조(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|제8조(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지역별 고용촉진 등 지역고
- 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 화 지<u>원</u>
- 7. -----제6호-----

- 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국고용정보원의 설립·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경 비를 출연할 수 있다.

⑥ ~ ⑨ (생 략)

<u>제7호</u>
⑥ ~ ⑨ (혀해과 간으)